

委任立法論의 最近動向

—美國의 경우를 中心으로—

徐 元 宇
(서울大 法大 教授)

一. 序. 權力分立과 委任立法

民主國家, 특히 그것이 大統領制의 民主國家라면 동페스큐의 權力分立은 必須的 要素라고 인정되어 왔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인정되고 있다. 사실상, 美國의 宪法制定過程에 깊히 참여했던 James Madison은 聯邦主義論 47號, 48號, 51號 (Federalist Papers, No. 47, 48, 51)⁽¹⁾를 통해서 權力의 分散과 相互牽制을 主唱하였다. 이러한 權力分立의 理論은 民主主義의 象徵으로美化되었고, 따라서 戰後의 新生國家들은 權力分立의 制度를 大투어 受容하였다 그러나 權力分立理論이 과연 얼마나 實效性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今世紀初부터 두되었다. 1908年에 Woodrow Wilson은 “……政府는 기계가 아니며 活動하는 것 (living thing)이다. ……그 機關을 相互牽制하고서 活動할 수는 없다. …政府의 生命은 신속한 協調에 依存한다”고 말했다.⁽²⁾ Karl Loewenstein도 종래의 權力分立論을 落後된 概念이라고 구정하면서 政策決定(policy-determination), 政策執行(policy-execution), 政策統制(policy-control)로 國家機能을 三分하고 있다.⁽³⁾ 결국 權力分立은 원래의 意味의 태만을喪失하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一側面은 아직도 健在하다 또한 앞으로도 健在할 것인데 이는 司法權의 獨立을 의미한다.⁽⁴⁾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權力分立은 — Brandeis 判事의 Myers判決의 유명한 反對意見⁽⁵⁾에서와 같이 — 人民을 獨裁에서 救하기 위한 論理일 뿐이다.

(1) Hamilton, Madison, Jay, *The Federalist Papers*. (Clinton Rossiter ed., New American Library, N.Y. 1961) pp.300-313, 320-325.

(2) W. Wilson, *Constitutional Government in U.S.* (1908) p.56. Wolfgang Friedman, *Law in a Changing Society* (2nd ed, Penguin Books, Middlesex. 1972) p.382에서 再引用.

(3) K. Loewenstein, *Political Power and the Governmental Process*. (2nd ed. Univ. of Chicago Press, Chicago, 1965) pp.34-52.

(4) Friedman, *supra*, p.383.

(5) Myers v. U.S. 272 U.S., 52 (1926), Mason & Beaney, *American Constitutional Law.; Introduction, Essays and Selected Cases*. (4th ed. Prentice-Hall, N.J. 1968), p. 91.

權力分立의 現代的 意義를 司法權의 獨立과 國民의 基本權 保障에서만 찾을 수 있다면, 종래의 權力分立論에서 말하는 立法權과 行政權의 區分은 그 存在理由가 박약해 진다. 英國과 같은 議會制 國家에서 議會가 行政府에 下位立法權(subordinate legislative power)을 許容하기를 꺼려 했던 것은 어느 흥미롭기도 하다. A.V. Dicey는 이러한 현상이 王權에 대한 制約으로서 구상되었던 것이今日에 와서는 行政府의 活動에 대한 不必要한 制約으로 되어 버린데 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⁶⁾ 그러나 今世紀의 鉅烈한 社會變化는 委任立法, 즉 行政府에 의한立法을 不可避하게 증진시켰다.⁽⁷⁾ 그리하여 오늘날 문제는 委任立法의 存在 自體가 아니라, 議會가 委任立法을 감시하기가 점점 어려워 진다는 데에 있다.⁽⁸⁾ 이 점은 美國과 共通되지만, 美國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어려워 진다. 즉 英國에서는 各部長官이 議會에 責任을 지지만 美國에서는 行政府가 議會에 責任을 지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많은 중요한 權力이 아무에게도 責任을 지지 않는 行政委員會(administrative agency)에 속하기 때문에 政治的 裁量의濫用은 美國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⁹⁾ 委任立法에 관한 문제는 美國에서 특히 심각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다. 즉, 法院에 의한 法律의 違憲審查(judicial review)가 바로 그것이다. 英國에서는 議會主權의 原則上 議會法은 至高의 權威를 갖게 된다. 따라서 議會가 그 權限의一部를 行政府에 委任하였을 경우에도 그러한 母法自體에는 하등의 헌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行政府의 委任立法(下位法令)이 母法에서 규정한範圍를 越過했을 경우에 (즉, *ultra vires*의 경우) 法院은 문제의 下位法令을 無效로 宣言할 수 있을 뿐이다.⁽¹⁰⁾ 다시 말해서 母法인 議會法은 神聖不可侵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美國의 議會法은 神聖不可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유로 전통적의 權力分立原則에 배반되는立法權의委任은 合憲性의 關門부터 通過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立法權은 委任될 수 없다.” (“Delegata potestas non potest delegari”, “legislative power cannot be delegated.”)라는前提是 그다지 강력한 것은 못되었다.

本稿는 美國에 있어서의 委任立法의 發展과 특히 최근에 있어서의 그 새로운局面을 다루는 것을 目的으로 삼는다. 委任立法의 극히 최근의 理論的動向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그쳐 소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다.

(6) A.V. Dicey,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 (10th ed. Introduction by E.C S. Wade, MacMillan, London, 1959) p.53.

(7) 英國에서의 委任立法의 發展, 委任立法의 目的에 대하여는 S.A. de Smith,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2nd ed. Penguin Education, Middlesex, 1973) p.333f. 참조.

(8) H.W.R Wade, *Administrative Law* (3rd ed. Oxford Univ. Press. London, 1971) p.315.

(9) Bernard Schwartz and H.W.R. Wade, *Legal Control of Government*. (Oxford Univ. Press. London 1972) p.106.

(10) de Smith, *supra*, pp.347-352. Wade, *supra*, p.322.

二. 委任立法의 發展

(1) 美國 行政法의 特殊性

委任立法을 論하기에 앞서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은 美國의 行政委員會(또는 獨立規制委員會, administrative agency)에 관하여서이다. 이러한 行行政委員會의 發達은 종래의 權力分立理論의 虛構性을 그대로 露呈시키고 있다. 즉, 行行政委員會는 規則을 制定하고 (立法), 그 規則의 違反與否를 調査하며(行政), 또한 그 規則의 違反與否에 관한 事實判斷을 행하기(司法) 때문이다.⁽¹⁾ 따라서 議會가 이러한 行行政委員會를 創設한 것은 그 自體로서 중대한 憲法問題를 야기시킨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이러한 行行政委員會의 發展은 종래의 政府三守가 긴급한 經濟·社會問題를 解決치 못한 데에서 연유한다.⁽¹²⁾ 1887年에 州際通商委員會(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가 창설된 이래, New Deal時代의 改革을 거쳐서 1911年에는 51個의 行行政委員會가 활동하게 되었다.⁽¹³⁾ 이런 결과로 聯邦政府 權限의 확대를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도 있지마는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¹⁴⁾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統制(control)에 集中되고 만다. 즉, 行行政的方法의 利點을 살리면서 專制的·恣意的인 權力의 惡을 피할 수 있는 統制의 手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¹⁵⁾에 핵심이 있게 된다.

行政權에 대한 統制는 그 본질上 立法府와 司法府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그러나 立法府와 行行政府가 協同關係를 이룬다면, 司法府가 立法·行政兩府를 모두 견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司法府의 世界觀이 立法·行政府의 그것과 다를 경우에 문제는 사뭇 심각해 진다. “立法權은 委任될 수 없다”는 古典的인 原則을 이유로 聯邦法律이 遷遯判決을 받은 것은 1935年的 단二件⁽¹⁶⁾이었다는 사실은 同 原則의 虛構性을 또 한번 드러내는 것이다. 1935年은 經濟的自由放任主義哲學에 사로잡힌 保守的인 大法院와 광범한 社會·經濟改革을 주도하려는 立法·行政府의 對立이 극도로 심각했던 때이었다.⁽¹⁷⁾

(11) G. Illhorn and Byse, *Administrative Law: Cases and Comments*, (8th ed. Foundation Press, N.Y. 1974) p. 57.

(12) *Id.*

(13) Schwartz & Wade, *supra*, p. 28. 行行政委員會의 生成過程 및 目的, 特徵에 대해서는 Gellhorn & Byse, *supra*, pp. 2-53 및 그에 引用된 문헌 참조.

(14) Schwartz & Wade, *supra*, p. 10.

(15) G. Illhorn & Byse, *supra*, p. 57.

(16) Pennsylvania Refining Co. v. Ryan, 293 U.S. 388 (1935). *Schechter Poultry Corp. v. U.S.*, 295 U.S. 495 (1935).

(17) 1934年에서 1936年까지 大法院은 최소한 13個의 뉴딜立法을 遷遯으로 判決했다. 루즈벨트 大總統이 大法院 改革案(Court-packing plan)을 내어 좋은 것도 이에서 비롯된다. H.J. Abraham, *Judicial Process* (2nd ed. Oxford Univ. Press, N.Y. 1968) pp. 289-294 참조. 하지만 上記의 두 判決이 뉴딜立法에 대한 단순한 적대감에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는 없다. 적대감 以上의 문제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Schwartz & Wade, *supra*, p. 86.

以下, 1931年 이전의 委任에 관한 判決과 1935年の前記 두 判決, 그리고 그 이후의 발전을 약술하나로 한다.

(2) 1931年 이전의 立法權 委任에 관한 判決

1813年に 大法院은 The Brig Aurora, 7 Cranch 382에서 立法權의 명백한 委任을 인정하였다. 즉, 英國이나 프랑스 중 어느 一國이 美國의 中立交易을 침해하기를 中斷하고, 또한 이러한 事實는 大統領이 宣言한다면 몇몇의 舊法 條項이 復活한다고 규정한 議會法은 立法權을 大統領이 委任한 것으로 無效라는 訴訟이 제기 되었는데 大法院은 “議會가 1809年 3月 1일의 法을 明白하게이든 또는 條件을 붙여서이든 復活시키는 裁量을 行使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之고의 주장을 거칠게 排斥하였다.⁽¹⁸⁾

1892年の Field v. Clark, 143 U.S. 649에서 大法院은 1890年の 關稅法(Tariff Act) 3項을 Brig Aurora를 援用하여 合憲으로 인정하였다. 同條項은 美國에 免稅로 農產品을 輸出하고 있는 나라가 美國商品에 대하여 關稅나 기타의 徵收金을 부과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關稅등의 부과가 不公平・不合理하다고 大統領이 인정할 때에 施行될 報復關稅(retaliatory tariff)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美國의 企業이 國際交易에서 不公正하게 다루어 진다고 大統領이 생각하면 그는 相對國에 대한 互惠關稅條項을 猶豫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同條項은 關稅賦課權의 大統領에의 移轉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Harlan 등 多數判事는 “議會가 그 權限을 大統領에 委任할 수 없다는 것은 憲法에 의하여 構成된 政府體制의 維持에 必須的! 것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原則”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同事件에서 그러한 委任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즉, 同事件에서의 大統領의 行為는 “단지 議會法의 執行”이며 “立法”은 아니며, 그는 단순히 立法機關의 執行人(agent)으로서 행동하였다고 判定했다.⁽¹⁹⁾

Brig Aurora 判決과 Field 判決은 大統領의 立法參與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지만, 이러한 事實上의 委任을 正當化할 理論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등장한 것이 細部立法說(“fill up the details”)이다. United States v. Grimaud, 220 U.S. 506 (1911)은 農務長官에게 山火 등에 의한 山林의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命令과 規則을 制定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한 法律에 관한 事件인데, 大法院은 全員一致로 農務長官의 權限은 立法權은 아니며, 단지 細部事項을 補完하는 (fill up the details) 權限을 행사하는 것 뿐이라는 이유로 同法을 인정하였다.⁽²⁰⁾

Buttfield v. Stranahan, 192 U.S. 470 (1904)는 또 하나의 正當化 理論을 提供한 것이

(18) Gellhorn & Byse, *supra*, p.58.

(19) *Ibid.*, p.9. John Marshall Harlan (1833~1911, 1877-1911在任)은 뒤에 나오는 Arizona v. California에서 反對意見을 쓴 同名인 John Marshall Harlan (1899-1971, 1955-1971 在任)의 祖父이다.

(20) *Ibid.*, p.10.

다. 同事件은 美國에 輸入되는 모든 茶類의 純度, 品質등의 基準을 財務長官이 정할 수 있으며, 이 基準의 檢查를 통과한 茶類만이 美國內로 輸入될 수 있다고 한 法律이 立法權을 委任한 것인가 하는 爭點을 나온 것이다. 大法院은 議會가 同法律에 “主要基準”(primary standard)을 정하여 놓았고 財務長官은 “法律에 宣言된 立法政策을 實현시키기 위한 執行의義務를 행하는 것”이라고 判示했다.⁽²¹⁾

J.W. Hampton, Jr. & Co. v. United States, 276 U.S. 394 (1928)은 弹力關稅(flexible tariff)를 규정한 1922년의 關稅法(Tariff Act of 1922)에 관한 事件인데 同事件에서 Taft 大法院長은 “議會가 分別 있는 原則(intelligible principle)을 규정”한다면, 그러한 法律은 立法權의 下法委任이 아니라고 判示했다.⁽²²⁾

이와 같은 立法權의 委任을 인정하면서도 大法院은 不委任原則(non-delegation doctrine)이 파괴되지 않은 것처럼 文字的 魔術(word juggling)을 사용하였다. (즉, “細部立法”, “主要基準”, “分別 있는 原則”등) 허지만 사실에 있어서 大法院은 不委任原則이 現實과 맞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과력한 것이다.⁽²³⁾

이와 같이 文字的 마술(word juggling)을 사용하여 委任을 인정하는 입장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行政法學者에 의하여 채택되고 있으며 通說의 立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²⁴⁾

(c) 1935年의 Panama 判決과 Schecter判決

그러나 어여한 文字的 魔術도 1933년의 國家產業復興法 1條 (Title I of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of 1933)의 委任條項을 正當化시킬 수는 없었다. 同法의 委任條項에 대한 違憲判決은 좀더 상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 Panama Refining Co. v. Ryan, 293 U.S. 388 (1935)⁽²⁵⁾

大恐慌의 打開를 위한 New Deal 立法의 하나인 國家產業復興法(N.I.R.A.)의 9-C項(Sec. 9-C)은 石油產業에 관한 것이었다. 同 條項은 州當局이 許諾한 生產量을 초과하여 生產된

(21) *Ibid.*

(22) *Ibid.*, p. 61. Taft는 大統領을 역임했던 탓으로 委任立法의 不可避性을 인식하였다고 말해진다.

(23) *Ibid.*, p. 62.

(24) 金道昶著, 行政法論(上), 青雲社, 1975, 204面은 Panama 判決等을 들고 “…이 判決들에서 政策(policy) 基準(standard)과 같은 立法의 本質的 事項은 法律이 직접 정하여야 한다는 委任의 限界와 그 限界 내에서 委任의 合憲性이 인정되게 되었다”고 쓰고 있는 데, 이는 1935년 이후의 發展을 전혀 도외시 한 것이다. 同書 210~211面에서는 “委任은 個別的 授權이어야 하고 一般的 白紙的 授權은 許容되지 아니한다”고 쓰고 있는데 과연 兩者的 差別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康文用 “行政上立法”(새 法政 1971年11月)에서는, “法律에 의한 委任은 個別的 授權이어야 하며 規制對象을 明確하게 限定하고 規制標準을 規定하여야 하므로……”라고 쓰고 있는 데, “個別的,” “明確”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어느 정도의 “規制標準”이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 가 남는다. 本稿의 結論 부문 참조.

(25) 以下, Mason & Beaney, *supra*, pp. 84~88, Gellhorn & Byse, *supra*, pp. 64~68에서.

原油 및 그製品이 州間 또는 國家間의 交易市場으로 運送되는 것을 禁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大統領에 부여하고 있었다. 同法은 1933年 6月16日 公布되었고, 7月11日 大統領은 行政命令(Executive Order)을 發하여 문제의 超過生產石油(흔히 “hot oil”이라 불리웠다.)의 州際 및 國際通商을 禁止시켰다. 同年 10月에 파나마精油會社(Panama Refining Co.)등 몇몇 石油會社는 同條項의 執行을 停止시키려는 訴訟을 제기하였다. 一審法院은 禁止令狀(injunction)을 發付하였으나 抗訴法院은 Field v. Clark 등의 예를 들어서 原審을 변복하였다. 會社側은 上訴하였고 大法院은 同條項의 立法權을 不法의 으로 委任하였다고 判決하였다. 法院의 判決文을 쓴 Hughes大法院長은 同法이 大統領이 따라야 할 政策(policy)이나, 大統領이 命令을 發하는 데에 관한 基準.standard), 또는 事實判斷(finding)의 要件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同法은 大統領에 無制限한 權限을 부여”하고 있다고 判示했다. 오직 Cardozo判事만이 반대하였다. Cardozo判事는 基準.standard)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論點이라. 그前提한 후, 大統領의 裁量權에 대한 基準은 同法 1項에 규정되어 있으며, 同 1項에 천명된 議會의 政策에 의하여 大統領의 裁量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同法의 委任條項은 有効다고 주장했다.

(B) Schecter Poultry Co. v. United States, 295 U.S. 495 (1935)⁽²⁶⁾

Panama事件 이후 5個月 만에 大法院은 國家產業復興法의 또 다른 條項(Sec. 3)을 違憲이라고 判決했고, 同條項의 (a)는 大統領에게 “交易과 產業의公正한 競爭을 保障”하기 위하여 命令(command)을 제정할 수 있는 權限을 인정하였다. 上訴人 セchter家禽會社(Schecter Poultry Co.)는 뉴욕에 자리잡고서, 뉴욕에 있는 仲介人으로부터 生禽을 구입하여, 역시 뉴욕에 있는 도수장에서 도살한 다음 소매상에 팔고 있던 중 同條項에 의거하여 大統領이 公布한 “뉴욕市·郡市地域 및 그周邊의 生禽產業(Live Poultry Industry)의公正競爭에 관한 命令”的 最低售價條項 등의 違反으로 有罪判決을 받았다. 大法院에서 문제가 된 점은 同法 3項의 委任條項의 合法性 與否와 同事案이 州際通商權(Commerce Power)에 속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大法院은 全員一致로 否定的으로 判決했다. Hughes 大法院長은 大統領의 命令制衡權에는 하등의 基準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立法權의 違憲의인 委任이라고 判示했다. 이번에는 Cardozo 判事도 이에 同調하였다. Cardozo는 別個意見을 통해서, “……同法에는 하등의 確固한, 심지어 大略의 基準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委任은 狂亂의인 것(this delegation is running riot)”이라고 말하면서 違憲判決에 賛同했다.

(4) Panama判決과 Schecter判決 이후의 委任立法의 發展

Panama判決과 Schecter判決은 議會, 行政府 및 法院에 모두 反省의 契機를 제공하였다.

(26) 以下, Gunther & Dowling, *Constitutional Law; Cases and Materials*, (8th ed. Foundation Press, N.Y., 1970), pp.274-277. Mason & Beaney, *supra*, pp.243-247. Gellhorn & Byse, *supra*, pp.68-71의 서

1938년의 公正勞動基準法(Fair Labor Standard Act)은 보다 상세한 行政決定上의 準則을 규정하였다. *Opp Cotton Mills v. Administrator*, 312 U.S. 126 (1941)에서 大法院은 同法의 有効性을 全員一致로 確認하였다. Stone判事는 “憲法이 不可能한 일이나 非實用的인 것을 要求하는 않는다. 立法府의 本質的 機能은 立法政策을 決定하고 行爲原則으로서 그 政策을 形成하는 데 있다”고 判示했다. ⁽²⁷⁾

Panama判決과 Schecter判決 이후 聯邦法律이 委任을 이유로 違憲宣言을 받은 일은 없다. 立法權의 委任을 인정한 代表的인 判決 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Yakus v. United States*, 321 U.S. 414 (1944)⁽²⁸⁾

1941년의 非常物價統制法(Emergency Price Control Act of 1942)은 物價管理官에게 日用品등의 最高價格을 정하는 條例와 命令을 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었다. 同法은 物價管理官이 爭作하여야 할 目的을 자세하게 규정하였다. (“物價를 安定시키고, 投機의이며 非正常的・變則의인 價格上昇을 豫防하고……防衛物資가 過多한 價格으로 인하여 分산됨을 막고, …生存保險과 年金에 의존하여 生活하는 사람들의 生活水準의 不當한 被害를 막고…”) 上訴人은 이에 위반하여 牛肉을 팔았다는 이유로 有罪判決을 받았다. 大法院은 原審을 인정하였다. Stone大法院長은 同法이 立法權을 違憲的으로 委任하지 않았다고 判示했다. 그는 憲去이 不可能한 것이나 非實用의인 것을 強要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다음, “法院의 慮心사는 議會의 意思가 존중되었는가 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Stone은 議會가 行政府 官吏에게 最小限의 裁量만을 허용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그러한 硬直의 인 事態를 피해서 보다 유연한 基準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한 다음, 法院이 事後에 審查할 경우。 그 委任이 너무 모호해서 受任機關의 行爲가 遷越(ultra vires)인지의 與否를 판단하기가 不可能하다면 그 委任은 無效가 될 것이라고 判示했다. 그러나 委任의 模糊性에 관한 Stone의 입장은 문제에 대한 答이 아니라 문제의 提起라는 評을 들고 있다. ⁽²⁹⁾

(2) *Arizona v. California*, 373 U.S. 546 (1963)⁽³⁰⁾

事務의 特異性으로도 많은 注目을 받았던 事件이며, 또한 委任問題에 관하여 세 명의 判事(Harlan, Douglas, Stewart)가 反對意見을 제출한 이 判決은 委任立法에 있어 아직도 그 限界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Arizona와 California등 몇 개의 州는 Colorado江과 그 支流의 물을 區分하는 것을 두고서 多年間에 걸쳐서 立法上 및 訴訟上 紛爭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이 紛爭은 1928年の Boulder Canyon Project Act (聯邦法)에 크게 영향을 받았었다. 즉, 同法은 内務長官(Sec-

(27) Mason & Beaney, *supra*, p.58.

(28) Gellhorn & Byse, *supra*, pp.73-74.

(29) *Ibid*, p.74.

(30) *Ibid*, pp.74-75.

retary of the Interior)에게 貯水를 配分하는 契約의 條款을 確定시키고 用水者를 選擇하는 广泛한 權限을 부여하였다. 同法에 의하여 內務長官은 이러한 決定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 江의 조절과 水的統制, 둘째, 灌溉와 用水 및 현재의 既得權의 존중, 세째, 水力發電의順序로 優先權을 두어서 판단할 것이 요구되었다. 大法院은 위와 같은 广泛한 선택권이 有效하게 부여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言及도 하지 않았다. 大法院은 이러한 일은 單一的으로 作用되어야 效果의이며, 議會는 이를 인식하고 內務長官에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주었다고 判示했다. 그리고는, “議會는 長官의 權限을 감축시키거나 확대시킬 수 있다. 議會가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同法에 의하여 禁止되지 않은…(Colorado 江事業의 遂行에 관한) 모든 權限은 長官에 속한다”고 했다.

Harlan判事는 內務長官의 權限에는 하등의 基準(standard)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抗議하였다. Harlan判事의 反對意見에는 Douglas判事와 Stewart判事が 賛同했다. Harlan判事는 “本法院이 ○ 法을 解釋한 바에 따르면……議會는 長官에게 每年 150萬 立方 에이커의 물(水)을 贈物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는 자신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이를 配分할 수 있게 되었다”고 委任의 尺度 不在를 비판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立法權의 广泛한 委任이 大法院의 認定을 받게 되자 종래의 委任理論의 修正과 더불어 새로운 방향으로의 모색이 시도되었다. 이에 관하여 가장 주목할 것은 다음 章에서 다루게 될, 1969年에 發刊된 K.C. Davis의 한권의 著書와 역시 同年に 發表된 한편의 論文이다.

三. 委任立法에 대한 새로운 接近法

—Davis의 理論을 中心으로—

(1) 裁量의 正義(“Discretionary Justice”)

1966年에 Louisiana大學에서 행한 講演을 기초로 하여 發刊된 “裁量의 正義”(Discretionary Justice)라는 著書⁽³¹⁾에서 Davis는 行政立法과 裁量行爲에 대한 종래의 敵對感 내지는 疑懼心을 버릴 것을 強力히 促求했다. Davis는 法則(rule)은 裁量에 의하여 補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法則의 機械的 適用은 不正義를 의미하며, 個別化된 正義(individualized justice)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裁量(discretion)을 통해서 단이 個別化된 正義는 이룩된다고⁽³²⁾ 말했다. Davis는 전통적인 法의 支配(rule of law)를 철저하게 固

(31) Kenneth C. Davis, *Discretionary Justice, A Preliminary Inquiry*, (Louisiana State Univ. Press, Baton Rouge, 1969.) Kenneth Culp Davis는 현재 Chicago大學 教授.

(32) *Ibid.*, p. 11.

守하고 있는 프랑크스委員會의 報告書(Franks Committee Report, 1957年 英國), Charles Dickin son, (Administrative Justice and the Supremacy of Law, 1927年), A.V. Dicey (Law of the Constitution, 8th ed. 1915年), 및 Friedrich A. Hayek (A Road to Serfdom, 1944年, The Constitution of Liberty, 1960年)들은 現代의 政府가 치해 있는 實際的 문제를 外面한 感情論, 希望論, 理想論(emotion, aspiration, ideal)일 뿐이라고 했다.⁽³³⁾ Davis에 있어서 “法의 支配”는 裁量權의 行使를 沢害하는 모호한 概念이었다.⁽³⁴⁾ 중요한 것은 法則(rule)과 裁量(discretion)의 調和이다. “裁量의인 權力を 減小시킨다는 것은 不可能할 뿐 더러 바람직 하지도 못하다. ……不必要한 裁量權을 減小시키고 필요한 裁量權을 制限(confine)하여, 構成(construct)하며, 統制(control)할 수 있는 보다 效率의인 方途를 모색하는 것이야 몇로 각별히 요구되고 있는 바이다.”⁽³⁵⁾ 그리고 나서 Davis는 法院이 필요한 裁量과 不必要한 裁量을 區分치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裁量權의 過多 現象이 초래되었다고 말하고 있다.⁽³⁶⁾ Davis는 이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不委任原則(non-delegation doctrine)에 관해 서도 言及하고 있다.⁽³⁷⁾ 하지만 委任문제에 대한 Davis의 보다 충열한 評價는 “委任立法에 대한 새로운 어프로우치”라는 論文에⁽³⁸⁾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2) 基準(standard)에서 安全裝置(safeguard)로

—委任立法에 대한 새로운 接近方式—

“不委任原則(non-delegation doctrine)은 거의 완전한 失敗로 끝났다. 이것은 立法權의 委任을 방지하지 못했다. 또한 委任된 權力은 有意義한 基準(meaningful standard)에 의하여 引導되어야 한다는 第二次的 目的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同原則이 不必要하고 無制約인 裁量權을 예방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제 法院은 不委任原則이 불만족스러운 것임을 깨닫고 慷意의인 行政權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나은 方途를 寸구해야 할 것이다.”⁽³⁹⁾

Davis는 前揭 論文의 序頭에서 위와 같이 언급한바 있거니와 이것은 말하자면 委任立法에 대한 종래의 接近法과의 完全 訴別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래의 委任論은 基準(standard)을 中心으로 다루고 있었으니까……

Davis가 위와 같이 언급하게 된 것은 물론 法院, 특히 聯邦大法院이 실질적인 基準을 하

(33) *bid.*, pp. 28-33.

(34) *bid.*, p. 28.

(35) *bid.*, p. 42.

(36) *bid.*, p. 51.

(37) *bid.*, pp. 44-50.

(38) Davis, A New Approach to Delegation, 36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713 (1969).

(39) *bid.*, p. 713.

등 갖추고 있지 않은 委任條項들을 合憲이라고 判決하여 온 데에 있다.⁽⁴⁰⁾

그렇다면 不委任原則은 왜 失敗하였나? Davis는 有意義한 基準을 갖추지 못한 委任이 오늘날에 시작된 것은 아니며, 美合衆國이 탄성했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 한다.⁽⁴¹⁾ 따라서 法院은 당초부니 不委任原則을 提起하지 않았어야 마땅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늘날의 복잡한 政府 기능은 有意義한 基準이 없이 立法權을 委任할 必要를 증대시켰다. 現代의 規制委員會(regulatory agency)들이 그들의 權限을 모호한 基準을 통하여 委任받지 못하였다면 그들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또한 法律의 制定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요한 문제를 規制委員會가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흔히 생기고 있다. 그리고立法者들은 이러한 중요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意味있는 基準을 설정할 능력이 없는 것이 또한 常事이다.⁽⁴²⁾ 뿐만 아니라 이제는 主要한 政策(major policy) 問題 마저도 行政委員會의 裁量으로 맡겨야 할 형편에 다달았다. 法院은 그러한 政策問題를 다루기에는 결코 알맞은 위치에 있지도 못하며, 法院에 이런 일을 요구하는 法律은 정말로 權力分立의 原則에 반할 것이다. 議會도 역시 이런 문제를 다루기에 알맞은 위치에 있지도 못하고, 그런 일을 할 時間도 없을 뿐더러, 이를 맡으려 하지도 않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行政委員會가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⁴³⁾

Davis가 不委任原則을 輕視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에 의하면, 美國의 法體系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문제는 執行權의 發動에 있어서의 選擇 問題이다.⁽⁴⁴⁾ (problem of selective enforcement) 즉, 檢察이 公訴權을 發動하는 것은 완전한 재량이며 (起訴便宜主義), 警察의 搜查도 역시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全行政機關은 그러한 發動上의 選擇裁量을 누리고 있다 예를 들면, 法務省의 反獨占部(Antitrust Division)는 犯法 혐의 가더욱 짙은 X企業을 訴追하지 않고 작은 혐의 밖에 없는 Y企業을 訴追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공할 만한 裁量權은 制定法上의 基準이나, 行政上의 基準에 의하여 引導되는 것도 아니며, 節次面에서 保護되지 않으며, 게다가 법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檢察이 數人の 共犯 中 어느 1人만을 起訴한 경우 그 被告인이 法 앞의 平等保護를 주장한들 法院이 인정할 티가 만

(40) Davis는 1967—1968년에 있었던 判決 셋을 引用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별다른 基準이 없어도 大法院에서 合憲으로 인정된 判決들이다. United States v. Southwestern Cable Co., 392 U.S. 157 (1968). American Trucking Association Inc. v. Atchison, Topeka & Santa Fe Railway, 387 U.S. 97 (1967), Permian Basin Area Rate Cases, 390 U.S. 747 (1968). *Ibid.*, at 715-719.

(41) “合衆國 法律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法院 업무의 질서있는 수행을 위한 모든 필요한 規則을 제정”한다. 1789年の 法院조직법(Judiciary Act of 1789, ch. 20, §. 17), “美合衆國 大統領이 제정하는 規則下”에서 軍人에 대하여 年金을 준다고 한 1789年 9月29일의 法률 等 第1회 議會(1st Congress)에서 제정된 6個 條項을 Davis는 列舉하고 있다. *Ibid.* at. 719-720.

(42) *Ibid.*, at 720.

(43) *Ibid.*, at 721-722.

(44) *Ibid.*, at 722.

무하다⁽⁴⁵⁾ Davis는法院이有意義한基準이 없이는立法權은委任될 수 없다고 되풀이하는 동안 우와 같은 결코許容될 수 없는 재량이 성행하는 것은 참으로 기묘하다면서, 이와正反對의體系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有意義한制定法上基準(meaningful statutory standards)이 없는委任을 허용하고, 반대로指針도 없고,統制도 받지 않는執行上의選擇權(unguided and unchecked power of selective enforcement)은 허용되지 않는體系가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한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裁量權을 통제할 수 있는體系가须要하다는 것이다.⁽⁴⁶⁾

이와 같이 Davis에 있어서不委任原則은 완전한虛構였다. 그것은 실제로失敗했으며, 또한inevitably失敗할 것이었으며, 現代行政의裁量을 조금도 제어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에대한代案은 무엇인가?

Davis는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接近方法을 제기하면서 다섯 가지의前提를 내어놓고 있다.⁽⁴⁷⁾

첫째 委任問題를論하는 것은不必要한, 또는無制約的인裁量權으로부터의保護에 그主要目標가 있다. 따라서,行政節次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의한規則制定(rule-making)節次를 통한行政立法이議會의細部立法보다私益保護에기여하는 바가크다는 사실을주목하여야 한다.

둘째, 安全裝置(safeguard)는基準(standard)보다훨씬 중요하다. 하등의基準이제공되어있으나 않더라도 적절한規則制定節次를경유하여規則을制定하도록委任한法律은, 그立法目的만明示되어 있다면認定되어야 한다.

세째, 보다 중요한 것은行政官의現實的인行爲이며制定法上의法文은 아니다. 따라서 어느정도의安全裝置및基準이제시되어있나하는判斷은制定法上으로만이루어질것은아니라,行政的인면에서이루어져야한다.立法府가基準을정하지못하는경우,行政府가 이를補充해야 할것이며法院이 이를무시할수는없다. 그러므로制定法에는基準。존재하지않는경우라도行政規則으로이것이보충되었다면그러한委任이基準不 在때문에無效果로되지는않는다.

넷째,委任問題가制定法上의基準問題에서行政上의基準問題로발전한다함은裁量權의規制問題로연결된다.⁽⁴⁸⁾

다섯째,不必要한,無制約의인裁量權으로부터의保護問題는委任된權力에限하는것은

(45) *Ibid.*, at 722-724. 자세한것은Discretionary Justice, pp.162-214참조. 이러한재량이정치적으로남용되면그결과는더욱가공해진다.

(46) *Ibid.*, at 724.

(47) *Ibid.*, at 725-730.

(48) Davis는委任問題를行政府의재량권문제와결부시켜다루는데특징이있다. 종래의委任論이權力分立이란空虛한도그마에내어있던것을생각하면Davis의이러한어프로우치는검討하다고평가되어야할것이다.

아니고, 行政府의 執行上의 選擇(selective enforcement)에도 관련된다.

Davis는 마지막으로 종래의 不委任原則의 代案으로 適法節次(due process)와 普通法(common-law)을 들고 있다.⁽⁴⁹⁾ 즉, 그가 주장하는 安全裝置(safeguard)는 行政의 節次上의 保障이다. 不委任原則은 非現實的인 것이며, 不必要하고 無制約의 裁量權을 시정하기 위하여 司法院가 介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다루는데 가장 적절한 도구는 適法節次이며, 不當한 재량을 교정하는 데에는 行政府가 그 스스로 基準을 設定하라고 法院이 명령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수단이라는 것이다.⁽⁵⁰⁾

四. 不委任原則의 올호

—J. Skelly Wright⁽⁵¹⁾에 의한 反駁—

1972年 Yale Law Journal에 발표된 J. Skelly Wright의 論文("Beyond Discretionary Justice")⁽⁵²⁾은 Davis의 前揭書에 대한 書評이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書評을 넘어서는 것이다. Wright의 論文은 말하자면 行政裁量에 대한 批判이며, 특히 Davis의 樂觀論에 대한 警鐘을 의미한다. Wright의 委任立法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委任問題에 관한 종래의 원칙의 終末을 宣言하는 것은 아직 성급한 처사라고 하면서,⁽⁵³⁾ Wright는 아나도 가장 적절한 不委任原則理論일 Arizona v. California에서의 Harlan判事의 다음과 같은 反對意見을 들고 있다.

“……無制約한 權限을 行政府의 官吏에……委任함은……중대한 憲法上 문제를 일으킨다. ……立法府에 의하여 許與된 權限이 적절한 基準(adequate standards)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憲法이 요구하는 權力分立을 保存하는데 긴요한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한다. 첫째로, 同原則은 우리 社會의 基本的 政策決定이 任命된 官吏가 아닌 國民에 직접 責任을 지는 機關에 의하여 이루어 지도록 保障한다. 둘째로, 同原則은 法院에 문제가 생긴 行政行為를 判斷할 準則을 제공함으로써 司法審查가 放縱(at large)해 지는 것을 예방한다.” (373 U.S. 546, 626)⁽⁵⁴⁾

그리고 나니 Wright는 종래의 委任原則이 行政委員會의 無制限한, 基準不在의 裁量을 막

(49) *Ibid.*, a 430.

(50) *Ibid.*, a 433.

(51) 콜럼비아地區巡回抗訴法院(U.S. Court of Appeals,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의 判事, D.C.에 몰려 있는 많은 聯邦行政委員會의 裁決에 대한 抗訴는 콜럼비아地區巡回抗訴法院의 관할에 속한다. 이러한 면에서 Wright의 反論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52) Wright, Beyond Discretionary Justice, 81 *Yale Law Journal* 575 (1972).

(53) *Ibid.*, at 582.

(54) *Ibid.*, a 583.

는데 중요한役割을 하며, 代議機關이 다루지 못하는 것을 專門家가 다루도록 하자는 주장은 濡情主義的 干涉政治(paternalism)이며 民主主義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는 戰爭權의 白紙委任을 가져온 통킹灣 決議(Tonkin Gulf Resolution)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했나를想起시키고 있다.⁽⁵⁵⁾ Wright는 결론적으로 議會는 立法權을 委任할 때 가능한 한 方針(guideline)과 基準(standard)을 설정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면서도 Wright는 議會가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憲法上 強制까지는 못되어도 憲法上の 道義的義務 될 것이라고 다소 완곡하게 말하고 있다.⁽⁵⁶⁾

五. 結論

이서 Davis의 입장과 이에 대한 Wright의 批判論을 종합하여 몇 가지 결론을 내린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委任立法을 敵對視하여서는 안된다. 委任立法은 의붓자식도 아니고 必要惡도 아니다. 委任立法은 現代의 福利行政國家에 있어 必須의인 존재일 뿐 아니라, 個別化된 正義(individualized justice)를 實現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그러나 本稿에서 문제로 삼은 것은 주로 經濟活動의 規制와 이에 준하는 극히 政策의이며 技術의인 事項에 관한 委任立法임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立法權의 委任이 國民의 중요한 基本權(civil right)⁽⁵⁷⁾을 制約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法律은 違憲의 혐의를 질게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法律은 “模糊하기 때문에 無效”(void for vagueness)라는 原則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基本權의 制約을 가져올 權限을 行政府에 委任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이를 부득히 委任해야 할 경우에는 그 法律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엄격한 基準이 訂定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그 基準이 모호하면 그 法律은 違憲으로 判斷될 것

(55) *Ibid.*, at 583-585.

(56) *Ibid.*, at 587. (“as a matter of constitutional morality if not constitutional compulsion”)

(57) 여기에서 말하는 基本權은 우월적 地位(preferred position)를 인정받는 自由權을 말한다. 미국 헌법 修正 1~10條에 이르는 權利章典은 그 대표적인 데이다. 이에는 表現의 自由, 宗教의 自由, 身體의 自由 등 가장 基本의인 人間의 自由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소위 相對的 基本權이라 할 經濟的基本權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自由權(특히 修正 1條의 權利)은 절대 불가침의 지위를 갖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Douglas 判事), 최소한 特權의in 保護를 받는다는 데 대해서는一致를 보고 있다. L.A. Powe Jr., “Evolution to Absolutism, Justice Douglas and the First Amendment,” 74 *Columbia Law Review* 371 (1974), Hugo L. Black, “The Bill of Rights” 35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866. (1960) 등 참조.

(58) *Kent v. Dulles* 357 U.S. 116 (1958), *Niemoto v. Maryland*, 340 U.S. 268 (1951). 및 U.S. v. *Roezel*, 389 U.S. 258 (1967)에서 특히 Brennan判事의 贊同意見 참조.

이다. ⁽⁵⁸⁾ 요컨대, 立法權의 委任 문제에도 二重基準⁽⁵⁹⁾ (double standard)은 적용된다.

둘째, 經濟活動 및 그에 준하는 事項에 관한立法에서의 委任은 광범하게 인정될 것이지만立法過程에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즉, 委任條項의 法文은 確實해야 하며,立法節次의 公開가 바람직하며, 行政政府가 制定한 委任法令들도公開되어야 할 것이다. ⁽⁶⁰⁾

세째,立法権을 委任하는 데 있어 基準은 아직도 중요한 役割을 한다는 것을 지나치게過少評價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하지만 基準不在의 委任을 無效로 할 것은 아니다. Davis의 主張대로, 行行政政府가 스스로 基準을 設定해서 決定하도록 法院이 강제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네째, Davis가 말하는 安全裝置, 즉, 節次上의 保障은 특히 중요하다. ⁽⁶¹⁾ 巨大한 政府의 權力を 견딜 때 있는 것은 오직 節次上의 公正(procedural fairness)에 의하여서이다. ⁽⁶²⁾ Frankfurter判事은 “自由의 歷史는 그 대부분이 節次的 安全裝置(procedural safeguards)를 遵守하여온 歷史였다”고 했으며(McNabb v. U.S., 318 U.S. 322), Jackson判事은 普通法이 소련法節次에 의하여 實行되는 곳 보다는 소련법이 普通法節次에 의하여 施行되는 곳에서 사는 것처럼 낫다고 말했다.(Shaughnessy v. U.S., 345 U.S. 206) ⁽⁶³⁾ 그래서 規則制定節次(rule-making procedure)야말로 現代 政府의 가장偉大한 발명품이라고 말해진다. ⁽⁶⁴⁾

결국, 委任問題의 총집도 종래의 基準 一邊倒에서 立法技術, 行政節次에 이르는 多邊的 인 어프로우드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通說의 見解는 별로 큰

(59) 法院이 法律의 合憲性을 審查할 때에 그 法律이 經濟立法인 경우라면 合憲의 推定을 넓게 빙지만, 그 法律이 國民의 基本的 自由(權利章典에 나타난,)을 制約하는 것이라면 엄격한 合憲性的의 檢查를 해야 한다는 原則으로서, 法院이 經濟立法에 관하여는 議會에 최대의 양보를 하고 基本權의 保護에 專力하게 된 1937年 이후의 大法院의 주요한 哲學이다. 이 개념은 “特權的自由” (“preferred freedom”)란 개념과 그 由來를 같이 한다. 美國의 聯邦大法院은 19世紀末부터 1930年代에 걸쳐까지 經濟的 自由放任主義哲學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進步的 社會立法를 謂憲으로 宣言했다. Holmes判事은 그의 保守的인 동료들이 經濟立法를 비토하는 데 강력히 反對하였다. 代表적인 것은 Lochner v. N.Y., 198 U.S. 45 (1905)에서의 反對意見인데, Holmes는 현법이 특정한 經濟理論을 意圖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經濟立法에서의 司法自制(judicial self-restraint)인데, Holmes는 그리면서도 判事들이 民權(civil liberties)이 관련된 사건에서 自制해서는 난된다고 말했다. 이런 사상이 Brandeis判事와 Cardozo判事を 거쳐서, [Palko v. Connecticut, 302 U.S. 319 (1937) 참조], Stone判事에 의하여 特權的自由(preferred freedom)와 二重基準(double standard)으로 발전된다. [U.S. v. Carolene Products Co., 304 U.S. 144, (1938). 특히 유명한 脚註 4 참조.] 이는 복잡한 경제활동의 규제가 法院 업무의 알맞은 對象이 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H.J. Abraham, Freedom and the Court (2nd ed. Oxford Univ. Press, N.Y. 1972) pp. 8-28, 및 Gunther & Dowling, ,*supra*, p. 1051.f 참조.

(60) Gellhorn & Byse, *supra*, pp. 85-88 참조.

(61)拙稿“裁量權濫用에 대한 法的統制—美國行政法의 一面”行政論叢, 第7卷 2號, 1969, pp. 256-274. 同, “行政節次의 法的規制에 관한 研究,”行政論叢, 第9卷1號, 1971, pp. 77-103 참조.

(62) Wade, *Administrative Law*, (1971) p. 171.

(63) *Ibid.*

(64) Davis, *Discretionary Justice*, (1969) p. 65.

의미도 『는 文字的 魔術(word juggling)을 사용해서 문제와의 對決을 避하고 있는 感을 주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現代國家에서의 行政에 대한 法的 統制는 立法的 統制나 司法的 統制와 같은 전통적인 公式的이며 外在的 統制만으로는 不充分하며 行政過程 자체 내에 있어서의 政策 内지 規則의 制定과 그 執行節次에 대한 具體的이며 個別的인 分析을 통한 行政의 對國民關係에 있어서의 實質적인 法益保障에 대한 方策이 究明되지 않으면 아니됨을 알 수 있다. 1971年 가을의 독일 國法學者協會總會에서 발표된 「行政의 現代的課題와 行政法의 도구마티그」라는 Bachof 와 Brohm의 報告⁽⁶⁵⁾에서 특히 Brohm은 西獨行政法學의 새로운 傾向의 하나로서 行政의 形成的機能(Gestaltungsfunktion)과 그 多元化라고 하는 特質을 바탕으로 하여 行政의 決定에 있어서의 時間的 契機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行政에 있어서의 内部的 意思形成過程의 문제와 意思決定過程에 있어서의 組織上의 문제에 대한 法的 認識이 行政의 새로운 展開에 당면하여 앞으로의 行行政法解釋學이 適應해야 할 課題가 운데 하나라고 적절히 지적한 바 있거니와⁽⁶⁶⁾ 오늘날 行行政法學과 行行政學이 學問的으로 提携할 有益な 問題領域의一面은 이런 観點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한다.

(65) Ot o Bachof, Winfried Brohm, Die Dogmatik des Verwaltungsrechts vor den Gegenwartsaufgaben der Verwaltung, Veröffentlichungen der Vereinigung der Deutschen Staatsrechtslehrer 30, S. 19: ff, 1972.

(66) a.a.O. S.289-290. Brohm에 의하면 종래의 行行政法理論은 다음과 같은 固有性에 의해 特徵지워진다고 한다. 즉, 侵害行政을 中心으로하여 展開된 行行政行為의 概念이 公權力의 表象으로서 存在하고 있으며, 合法性과 個人의 權利保護問題가 重點을 形成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行行政像是 行行政行為의 執行的機能(vollziehende Funktion)에 의해 規定되며, 그것은 法律의 適用으로서 极めて 容易하게 論理的 推論과 엄격한 拘束性을 同一視한다. 따라서 行行政의 形成機能, 節次法的, 組織法的 問題는 그 背景에 물려서게 된다. 行行政法은 固有의 個人主義的, 局所的 性格(individualistischer und punktueller Charakter)을 지니며, 그 基本的 方向도 靜態的이다. 그것은 行行政行為는 概念에 의하여 단순히 어떤 決定過程의 終局點만을 把握하지, 過程全體를 把握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行行政行為를 단순히 孤立되어 있는 個個의 私人에 대한 規制로서만 考察할 뿐이지 그 背景에 展開되는 그 效果 및 行行政聯屬이라는 観點에서 考察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이 限度內에 있어서 종래의 行行政行為에는 空間的 時間的 次元이 缺如되어 있다고 한다. a.a.O. S. 253-256.